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[시행 2023.02.08] (일부개정) 2023.02.08 조례 제1988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주민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797-277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양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 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참전유공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광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
- 1. 6.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- 2. 「병역법」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된 군인
- 3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- 4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- 5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

제3조(지원대상자)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- 1.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<개정 2023. 2. 8.>
-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람

제4조(지원사업) 광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- 1.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: 월 100,000원<개정 2012.11.21, 2014.1.8, 2017. 12. 27., 2023. 2. 8.>
- 2.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: 월 30,000원 지급 <개정 2023, 2, 8,>
- 3. 참전유공자가 사망위로금 : 월 300,000원 지급 <개정 2017. 12. 27., 2023. 2. 8.>
- 4.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(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): 월 100,000원 지급 <개정 2023. 2. 8.>
- 5.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개정 2023. 2. 8.>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제4조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- 1.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: 별지 제1호서식 <개정 2023. 2. 8.>
- 2.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: 별지 제1호서식 <개정 2023. 2. 8.>
- 3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별지 제2호서식 <개정 2023. 2. 8.>
- 4.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(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) : 별지 제2호서식 <개정 2023. 2. 8.>
- 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3. 2. 8.>
- ③ 삭제 <2023. 2. 8.>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8.>

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 보훈청장 및 지역 소속 단체장에게 확인해야 한다.

제7조(지급방법) ① 수당은 매월 20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)에 지급신청서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[본조신설 2023. 2. 8.]

제8조(지급 중지의 결정 등)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

- 1. 사망한 경우
- 2. 다른 시·군·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
- 3.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
- 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3. 2. 8.]

제9조(환수 조치)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- 2.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- 3. 잘못 지급된 경우 [본조신설 2023. 2. 8.]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[제7조에서 이동 <2023. 2. 8.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08. 11 26. 조례 제91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10.11.24 조례 제1038호)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12.11.21 조례 제1167호)

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14.1.8 조례 제124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7. 12. 27. 조례 제15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23. 2. 8. 조례 제198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